



보 건 복 지 부



수신 ■■■■■ 귀하

(경유)

제목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

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「청원법」 제2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.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청원심의회의 심의: 여 [V] 부 []

청원서 접수번호	■■■■■
청원 내용	도수치료 관리급여 반대 및 물리치료사 고용 불안
청원처리 결과와 이유	○ 우리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적정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, 그 일환으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, 급여기준을 설정·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. -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 등 관리급여 적용은 2025.12월 의료계, 환자·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한 ‘비급여관리정책 협의체’ 논의를 거쳐,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2026.6월 ‘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’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. -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,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, 반복적·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. ○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, 교정,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로, 기존 물리치료·재활 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입니다. -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·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·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있으며,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 외에도 다양한 재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청원처리 결과와 이유	○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도수 치료가 환자에게 제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, -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피는 등 급여기준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한편,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 및 재활 의료 분야에서 물리 치료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,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활치료 및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과 전문적 역할 역시 유지될 것이라 사료됩니다. - 아울러, 물리치료사 직군의 고용 현황 및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깊은 이해있으시길 바랍니다.			
처리담당자	소속	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팀		
	이름	이은경	전화번호	044-202-2693
그 밖의 안내사항	2026년 제12차 청원심의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 임			

붙임 1. 청원서_ 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민간전문가 **이은경**

행정사무관 **한샘**

비급여관리팀 전결 2026. 9. 17.
장 **정순애**

협조자

시행 비급여관리팀-448

접수

우 -

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693

팩스번호 044-202-3982

/ gkfk05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